

202.60호

행 정 명 령

**법률의 일시 중지 조치 및 수정 유지
재난 비상 상황에 관한 사항**

2020년 3월 7일에 본인이 뉴욕주 전 지역에 재해 주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제202호 행정명령(Executive Order)을 발령했기 때문에,

2019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는 주로 유럽에서 뉴욕에 들어왔으며, 2020년 1월 말부터 3월 16일 사이에 220만 명 이상의 여행자가 들어와 연방 정부가 마침내 유럽인 진입을 완전히 금지했기 때문에,

그 기간에 220만 명의 여행자들이 뉴욕시 메트로폴리탄 지역에 착륙하여 뉴욕의 지역사회에 들어갔는데, 이는 우리 인구 밀도와 결합하여 미국에서 뉴욕의 코로나19 감염률이 가장 높게 만들었기 때문에,

코로나19의 여행 관련 및 지역사회 접촉 전파의 두 사례 모두 뉴욕주 전역에서 기록되었으며, 주 및 지방정부의 바이러스를 추적, 검사 및 억제하기 위한 지속적이고 부지런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전파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뉴욕이 뉴욕주 재개를 위한 신중하고 점차적인 증거 기반 접근 방식에 착수했기 때문에,

"감염률을 줄이려는" 뉴욕 주민들의 헌신은 코로나19 전파 속도를 성공적으로 늦추었으며, 이러한 주의 깊은 노력은 우리 자신과 친구, 가족, 이웃, 지역사회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 계속되어야 하기 때문에,

뉴욕주가 가장 높은 감염률을 보인 주에서 가장 낮은 감염률을 보이는 주로 바뀌었으며, 코로나19 확산을 계속 통제하고 있는 유일한 주로 보고되었기 때문에,

주의를 덜 기울인 접근법은 취했을 수 있는 기타 주가 코로나19 사례 발생의 증가를 겪고 있고 다른 주에서의 사례 발생은 계속해서 뉴욕의 진전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연방 정부는 특히 전국적인 검사 전략을 수립하고 전국적으로 안면 가리개 사용을 시행하는 데 실패하여 나라를 파괴하는 코로나19의 원인 및 영향을 충분히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 본인 **ANDREW M. CUOMO** 뉴욕 주지사는 뉴욕주 헌법 및 법률이 본인에게 부여한 권한에 의거, 영향을 받는 주정부 기관 및 지역의 지방정부들이 적절히 대응할 수 없는 재난 사태가 계속 존재한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뉴욕주의 헌법과 행정부법(Executive Law) 제2-B조 제28항이 부여한 권한에 따라 본인은 행정명령 202호에서 설정된 것과 같이 2020년 3월 7일 토요일에 발효된 주 재난 비상상황(State Disaster Emergency) 선포를 지속하는 바입니다. 이 행정명령은 2020년 10월 4일 일요일까지 효력을 가집니다.

또한 저 Andrew M. Cuomo 뉴욕주 주지사는 모든 주 비상시 기관의 법령, 지방법, 조례, 명령, 규칙 또는 규정 또는 그 일부의 준수가 비상사태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방해, 저해 또는

지연시킬 경우, 혹은 이러한 비상사태 대응 지원 또는 보조를 위해 필요한 경우, 그러한 조항을 일시 중지 또는 수정하기 위해 행정부법 제2-B조 제29-a항에 의해 본인에게 부여된 권한으로, 행정명령 202호에서 202.21호 및 202.27호, 202.28호, 202.29호, 202.30호, 202.38호, 202.39호, 202.40호, 202.48호, 202.49호, 202.50호가 연장된 바와 같이 및 행정명령 202.55호와 202.55.1호로 발령된, 후속 지침에 의해 대체되지 않은 일시 중지 및 수정과 지침을 2020년 10월 4일 일요일까지 30일간 더 연장하며 다음을 일시 중지 및 수정합니다.

- 공공기관법(Public Authorities Law)의 제2804항, 공공기관이 원격, 전화 회의, 화상 회의 및/또는 기타 전송 수단(우편 또는 전자 수단을 통한 대중 의견 수용을 포함)으로 개최되는 공청회를 통해 제안된 통행료 조정에 관한 의견을 수령하도록 허용하고 모든 필요한 기록 및 문서화가 인터넷 및 요청에 따라 전자 형식으로 가능하게 하는 데 필요한 범위까지.
- 2020년 법률 25장 제1항의 세부조항 4, 질병 통제 예방 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가 2단계 또는 3단계 여행 경보를 내린 국가로의 여행 외에도, 해당 직원이 자발적으로 여행을 시작해 7일 연속 평균으로 평균 주민 10만 명당 10명의 양성 검사율보다 높거나 양성 검사율이 10%보다 높으며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커미셔너가 행정명령 205호에 따라 발행된 권고에 개략된 조건을 만족한다고 지정한 주로 여행하고, 해당 직원이 보건부 커미셔너가 해당 주를 지정하기 전에 그러한 주로 여행을 시작하지 않았고, 해당 여행이 근로자의 근무의 일부이거나 고용주의 지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면 근로자는 본장에 따라 유급 병가 수당 또는 모든 기타 유급 수당의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제공하기 위한 범위까지 개정.
- 행정명령 202.48호 및 202.55호, 202.55.1호로 최근 대부분 지속 및 수정된 행정명령 202.8호에 포함된 일시 중지는 비영리 단체가 사용할 저렴한 주택 또는 공간 건설 프로젝트의 모든 지방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승인에 이의를 제기하는 모든 행위와 관련된 민사 공소시효의 중지가 해제되도록 이로써 개정됩니다. 형사소송법(Criminal Procedure Law) 제30.30항의 일시 중지는 이에 따라 관할권에서 신속 재판 시간 제한의 일시 중지가 형사 소배심원단이 해당 관할권에서 다시 소집되고, 형사소송법 170.70이 더 이상 일시 중지되지 않을 시간까지 지속되도록 이로써 수정되며, 대면을 요구했던 모든 출석은 당사자들의 동의로 계속 가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지방 전기 협력법(Rural Electric Cooperatives Law) 제17(d)항, 최소한의 대면 정족수 요구사항을 제거하는 데 필요한 범위까지.
- 부동산세법(Real Property Tax Law) 제11조 5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선취특권을 판매할 수 있는 능력과 관련하여 일시 중지됩니다.

또한, 행정부법 제2-B조의 제29-a에 의해 본인에게 부여된 재해 비상사태 기간에 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지침을 발행할 수 있는 권한에 의거하여, 본인은 이로써 다음 지침을 2020년 10월 4일 일요일까지 발행합니다.

- 주의 모든 학교의 대면 교육 폐쇄를 요구하는 행정명령 202.45호에 포함되었으며 연장된 바와 같은 지침은, 주전역의 학교가 교육을 위해 열 수 있도록 하는 한에 있어서만 수정되며, 이는 2020년 9월 1일부터 발효되고 보건부가 발행한 지시 및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교육청은 운영을 원격으로 수행하는 모든 교육구가 식사를 이용할 수 있고 의료 및 응급요원을 위한 보육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계획을 지속해야 하며, 대면 교육을 폐쇄한 모든 교육구는 즉시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할 비상계획을 유지해야 합니다
- 검시관이나 의료 검사관은 시신의 사망 원인이 코로나19 또는 인플루엔자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했지만 요양원 또는 병원 또는 호스피스 기관에서 사망 14일 이내에 그러한 검사가 수행되지 않았을 때마다, 시신이 사망 48시간 이내에 수령되었다면 검시관 또는 의료 검사관은 코로나19 및 인플루엔자 검사를 사망 후 48시간 이내에 모두 시행하여야 하며, 보건부가 공포한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검시관 또는 의료 검사관은 보건부에서 결정한 수단을 통해 그러한 두 검사 결과를 수령한 직후 보건부에 사망을 보고해야 합니다. 주 보건부는 지원을 요청하는 검시관 또는 의료 검사관에 대한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 나소 카운티 행정법(Nassau County Administrative Code) § 5-17.0(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걸린 후 사망하여 직계 가족 또는 유산으로 소유된 나소 카운티 보건의료 노동자 및 응급요원이 사망 시 전체 또는 일부 소유하였던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나소 카운티 세금 대장에 제시된 2019~2020년 하반기 국세를 2020년 8월 10일에서 2020년 8월 31일까지 벌금 또는 이자 없이 납부하기 위한 기한을 일시 중지하는 데 필요한 범위까지.

- 나소 카운티 행정법 § 5-16.0(b), 2020년 12월 10일 전에 납부된 2020~2021년 하반기 교육구 세금에 1% 감세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범위까지.
- 비디오 복권 게임이나 카지노 게임을 수행할 권한이 있는 모든 시설의 공공 부분을 폐쇄하도록 요구하는 연장된 바에 따른 행정명령 202.3호에 포함된 지침은 이로써 해당 시설이 보건부 지침을 준수하여 2020년 9월 9일 또는 그 이후부터 개장을 시작할 것을 허가하도록 수정됩니다.
- 뉴욕시 지역의 해당 쇼핑몰은 폐쇄를 유지하며 주의 재개 4단계에 있는 지역의 소매 쇼핑몰의 실내 공용 부분을 열 수 있도록 허가한 행정명령 202.53호에 의해 개정된 행정명령 202.50호에 포함된 지침은, 이로써 해당 쇼핑몰들이 2020년 9월 9일 및 그 이후 보건부가 발행한 지침을 준수하는 한 뉴욕시 지역에서도 열 수 있도록 개정됩니다.

2020년 9월 4일 올버니시에서 본인이 서명하고

주 정부 관인을 날인하여

선포합니다.

주지사

주지사 비서